

●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공고 제2026-97호

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제한 위반행위자 등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알림을 통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에게 이의제기 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09월 04일

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장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

1. 근거법령

-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(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), 제76조(과태료)
-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(과태료의 부과)
- 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, 제15조(송달의 효력발생)

2. 행정처분 대상자: 유동화

3. 게재(게시) 기간: 공고일로부터 14일간

4. 이의제기 기한: 게재(게시) 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

5. 이의제기 제출 장소: 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29, KCA부산본부 605호,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부산분소 【전화: 051-967-1205, FAX: 051-967-1208, E-mail: lchh2003@korea.kr】

6.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,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,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,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.

- 건명: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
- 수입근거: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(과태료)
- 산출근거: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및 별표9

※ 체납할 경우, 과태료에 3%가 가산 되며,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1.2%씩 60개월간 증가산 됩니다.

행정처분 대상자 내역

순번	대상자	생년월일	고지주소	위반법령	과태료	스팸URL 전화번호	광고내용
1	유동화	1974.**.09.	대구시 달서구 월배로	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, 제4항, 제6항	375만원	1833-94**	일반